- 3. 제2호 규정에 따른 질병군 입원진료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다.
 - 가.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으로 <mark>응급실 · 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</mark>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
 - 나.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중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,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,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,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, 기타항문 수술,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(장관절제 미동반) 단측,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(장관절제 미동반) 당측,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(장관절제 미동반) 단측,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(장관절제 미동반) 단측,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(장관절제 미동반) 양측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
- Q. 자궁경부의 근종인경우 <mark>외래에서 입원없이</mark> 시행하는 자궁근종절제술-질부접근(R4123) 이 포괄수가제 포함 대상 인가요?

포괄수가제 포함 대상인경우 행위별청구외에 추가로 다른 청구방법이 있나요?

자궁근종절제술-질부접근(R4123) 의 포괄수가제 포함여부

질병군(DRG) 포괄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7개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질병군 입원진료는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- 다음 -

- 7개 질병군으로 응급실 · 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
- 7개 질병군 중 수정체수술(대절개 단안 및 양안, 소절개 단안 및 양안), 기타항문수술,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단측 및 양측(복강경 이용 포함)의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

따라서 자궁근종으로 자궁근종절제술-질부접근(R4123)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(외래)는 <mark>행위별청구대상</mark>임을 알려드립니다.

Q. 제왕절개분만 후 산후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당일 이송한 경우(6시간 미만 진료) 질병군 적용여부

제왕절개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6시간미만 진료도 질병군 적용 대상임

Q. 쌍둥이 임산부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으로 분만방법을 달리하여 출산한 경우 청구방법은?

전체 진료내역을 <mark>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함</mark>.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은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제왕절개분만명세서에는 상해외인에 "D"를 기재하여 청구함

Q. 제왕절개분만의 질병군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신생아진료비용 청구방법은?

제왕절개분만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별도로 신생아 진료비용은 <mark>행위별로 청구</mark>함(2010년 7월부터 적용)